

THE SHARP 천안레이크마크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 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시 까지)

- 더샵 천안레이크마크는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사이버 견본주택(더샵천안레이크마크.com)으로 운영합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더샵천안레이크마크.com)를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발표 후 당첨자계약 기간 등 일부 지정일에 한하여 견본주택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당사가 고지한 해당 날짜 및 운영시간 외에는 견본주택 방문 불가)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 시 아래의 일정안내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이 가능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가.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나. 견본주택 입장 시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다. 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전신소독기를 통한 전신소독 등 예방철처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사이버 견본주택 및 클린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관람 인원 조정 등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전화(☎041-555-7988)를 실시 할 예정이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인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규제지역에 적용), 제26조제5항(비규제지역에 적용)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 신청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본 아파트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에게 공급하므로 본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거주해야 하며, 본인 및 배우자 그리고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1.7.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10.05.(화요일)입니다.(주택소유여부, 청약자 나이, 거주지역 등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8.27.(금)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6000이므로 주택공급가격 및 세부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단, 외국인인 청약 불가)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5항(규제지역에 적용), 제26조제5항(비규제지역에 적용)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공급하므로 제23조제2항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 아파트 무순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인 생애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본 아파트는 1순위 및 2순위 청약마감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 선정되어 계약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경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공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본 아파트는 당사 홈페이지(더샵천안레이크마크.com)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장접수 불가)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순위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당사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실시합니다.

구분	무순위(사후) 청약 접수	당첨자 추첨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일정	10월 06일 (수요일)	10월 06일 (수요일)	10월 06일 (수요일)	10월 07일(목요일) ~ 08일(금요일)	10월 13일(수요일) 10:00 ~ 14:00	· 당사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을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10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방법	당사 홈페이지 접수 (10:00 ~ 15:00)	선착순 10명에 한하여 추첨방법 가능 (17:00까지 입장)	당사 홈페이지 및 SMS안내 (10월 06일 18:00 이후)	—	—	
장소	당사 홈페이지	당사 견본주택	당사 홈페이지	당사 견본주택	—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1인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당사가 공급하는 더샵 천안레이크마크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자는 무효처리됨.
- 2021.7.5.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의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내역

- **공급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64-17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최고층수 28층, 4개동 총 411세대 중 정당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 이후 잔여물량 5세대
- **입주시기** : 2024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	잔여세대 동·호수	
			동	호수
065.5700A	65A	3	101	1602, 1702, 1901
075.8100B	75B	2	102	1501, 2801
합계		5	-	-

※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8.27.(금요일)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6000이므로 '주택공급가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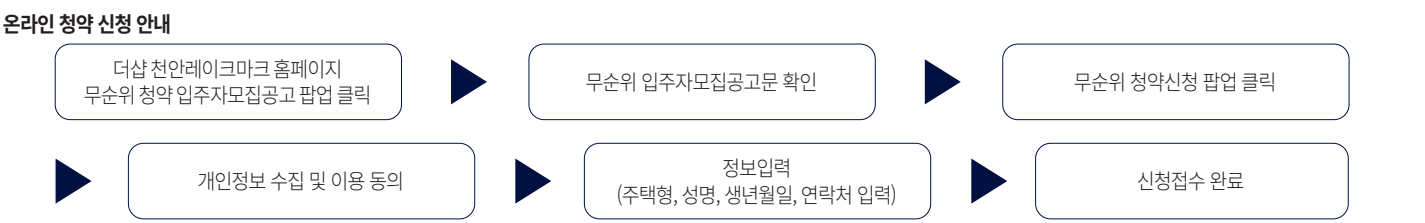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본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재당첨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청약신청 제한(현재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함)**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 상기 당첨자가 당첨될 경우 무효처리 되며, 예비입주자에게 해당 동호수를 공급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자로서 당첨이 취소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인 주택 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천안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청약 신청 안내**



III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 일시 : 2021.10.13.(수요일) 10:00~14:00 [코로나 19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당첨자에 한해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서류	당첨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당첨자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용으로 대체
	당첨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에 한함)
	당첨자 주민등록표등본(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발급)	공고일 현재 거주지 확인
	당첨자 출입국사실증명원(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발급)	기록대조일은 출생년월일부터 모집공고일(2021.10.05.)까지
기타 소명자료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상납불가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계약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이외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당첨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일 확인(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위원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 당사 견본주택 비치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상기 구비서류는 무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2021.10.05.(화))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인감증명서의 경우**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 바랍니다.
- ※ 당첨자 본인 단독 명의로만 계약 가능합니다.(명의변경, 공동명의 불가)

- **예비입주자 선정 및 계약관련 안내**
-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형별 잔여세대수의 10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무순위 청약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 : 2021.10.14.(목요일) 10:00까지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별 동·호수 선정하여 진행하며 선정 방식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예비입주자 동·호수 계약시기는 코로나 19 등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 2021.10.14.(목) 동·호수 선정 후 즉시 계약
-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당첨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시 현금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계좌**

구분	납입금액	계좌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분양대금	공급금액의 10%	561-060813-04-017	IBK기업은행	우리자산신탁(주)
		561-060813-04-031		
		561-060813-04-049		
발코니 확장 공사비				
추가선택 옵션품목 1				

IV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연락처 오기, 통화 부재 및 SMS거부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동호추첨 이후 계약체결 기간내에 계약진행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잔여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일부 계약금 입금 후 해당 일자에 계약체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 당첨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합체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금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로 간주됩니다.
- 추후 중도금 대출신청 시 기존 대출여부, 나이, 직업, 신용도 등에 따른 대출여부 책임은 당사자(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권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차 상이함)을 통한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본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건설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근무처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소속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사적의 일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제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적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정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설 「건축법」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이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서 정한 건축법규를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용도 1호 또는 2호) 또는 세대대면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를 적용한 세대에 대한 주택을 신청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 방식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분양금액 및 분양조건, 중도금대출, 유의사항 등 기타 내용은 「더샵 천안레이크마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8.27.) 내용을 준용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시행 및 분양위탁	케이디 주식회사	120111-0012914
시행 및 분양수탁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110111-2003236
시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174611-0002979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279번지, 더샵 천안레이크마크 견본주택
- **사이버 견본주택** : 더샵천안레이크마크.com
- **분양문의** : 041-555-7988